

5-0-6. 장학금 지급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대전가톨릭대학교(이하 본대학이라 한다)의 교육이념을 구현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가톨릭 성소자로서 올바른 생활과 면학 분위기를 권장하고, 이를 위한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본 대학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장학단체나 기타 기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2장 장학위원회

제3조 (설치) 본 대학의 장학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 (구성) ① 장학금 지급 업무는 학생처장이 관장한다.

② 위원은 생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며, 간사위원은 학생과장이 된다.

제5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학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장학금 지급 기준 및 배정에 관한 사항
3. 장학생 선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
4. 장학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5. 기타 장학에 관련된 중요사항

제6조 (장학금 지급계획 심의와 승인) ①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장학제도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② 학생처장은 매학기 교내 장학금 지급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장 장학생의 선정 및 지급

제7조 (지급대상) 본 대학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
2.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
3. 가정사정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
4. 보훈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자녀
5. 본 대학 교직원의 직계자녀

6. 지급하는 자가 수혜요건을 특정하였을 경우 그 요건을 갖춘 자
7.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로 소속대학 장학금지급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
8. 교내 특정 부서에 배치되어 봉사 활동을 하는 근로학생
9. 기타 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

제8조 (총장특별 장학금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우리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
2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9조 (신청기간 및 방법)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학교에서 공고하는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과에 신청하여야 한다.

1. 공통서류
 - 가. 장학금 지급 신청서 (별표 2) 1부
 - 나. 전학기 성적표 사본 1부
 - 다. 주민등록등본 1부
2. 종류별 서류
 - 가. 호주 또는 세대주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농지세 과세 증명서(제 7조 3호 대상자)1부 (단, 비과세인 경우에는 재산세 또는 농지세 비과세증명서)
 - 나. 보훈청 발행 보훈대상 증명서(제7조 4호 대상자) 1부
 - 다. 소속기관장의 재직증명서(제7조 5호 대상자) 1부

제10조 (신청자격 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상실한다.

1. 학칙에 의한 징계를 받은 경우
2. 휴학자
3. 기타 학비보조가 필요 없다고 판정된 경우

제11조 (장학금 지급기준)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 과 같다.

제12조 (지급방법)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매학기 등록금납입고지서에 장학금을 명시하여 지급한다. 단, 교내외 장학금이 등록기간 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. 특별한 경우는 장학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제13조 (수혜기간) 장학금의 수혜는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못하며 편입학자는 정상적인 잔여 이수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.

제14조 (지급유효기간) 장학금의 지급은 수혜사유가 발생한 당해 학기내에 한한다.

제15조 (외부장학금 관리) ① 외부 장학재단이 수혜대상 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된 대상자를 추천한다.

② 수혜대상 학생을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③ 외부장학금은 일단 경리과에 송치하고 소정의 절차에 의거 지급하도록 한다.

제16조 (이중지급의 금지)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다른 교내외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. 단, 이중수혜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중 본인이 유리한 종류를 택할 수 있다.

제17조 (장학생의 실격)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며 지급한 장학금은 환원하여야 한다.

1.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2. 품행이 불량하여 학교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3. 학칙에 의한 징계를 받은 자
4.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학금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자
5. 자퇴자
6. 군입대 이외의 사유로 휴학하는 자
7. 타대학에 전출입하는 자

제18조 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 별표 1 >

장학금 지급기준

구분	종류		선발기준	대상범위	지급액
총 장 특별장학금	외국유학생 장려장학금		외국 국적의 유학생	외국국적의 학생	수업료 및 생활비
	생활 장학금	A	가정사정이 곤란한 학생으로 신학원장의 추천을 받은자	대상자 전원	기숙사비 전액
		B			기숙사비 일부
유빌레움 장 학 금	면학장학금		학업성적이 양호하고 가정형편이 극히 곤란한 자	약간명	계획에 따라 지급
	대여장학금		형편이 곤란하여 재학기간 중 대여받고자 하는 자	약간명	신청액
성직장학금	부제장학금		부제품에 수품 받은 자	대상자 전원	수업료 전액
	A		가톨릭사제가 되고자 하는 자 중 가정사정이 곤란한 자	대상자 전원	수업료 전액
	B			대상자 전원	소정의 장학금
교내장학금	A		재학생중 해당학년 학업 성적 최우수자	각학년별 수위자	소정의 장학금
	B		재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	약간명	소정의 장학금
	C		재학생중 각 학년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	약간명	소정의 장학금
	근 로 장 학 금	자 치 활 동 장 학 금	학생자치활동에 기여한 자로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자	약간명	소정의 장학금
		봉 사 장 학 금	가정사정이 곤란한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내 특정부서에 배치되어 봉사활동을 하는 근로학생	약간명	소정의 장학금
	우수장학금		입학성적이 우수한 자	약간명	계획에 따라 지급
기타	보훈장학금		보훈대상자 본인 및 직계자녀	해당자 전원	등록금 전액
	교직원직계 자녀장학금		본 대학 교직원의 자녀	해당자 전원	수업료 전액
	교외장학금		각종 대외 장학금으로 선발되는 자	해당자 전원	선발기관 지정액